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7. 원영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 원영숙 박기훈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정순세 김성군)

나. 회부일자 : 2019. 6. 7.

다. 상정일자 : 2019. 6. 20.(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기훈 의원)

가. 제안이유

- O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게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 O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하여 일부 용어 정비

나. 주요내용

-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유족의 범위 확대 및 용어순화 : 배우자, 직계존비속 → 배우자(사실혼의 관계에 있던 사람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안 제2조제2호)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안 제3조제2항)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장애등급"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장해등급" (안 제5조제1항)
- 보상심의회 운영기간 명시 :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안 제9조)
- O 이해하기 쉽게 일부 조항 정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2019. 7. 1.부터 '장애등급'이란 용어의 폐지와 관계법령이「공무원 연금법」에서 2018.3.20. 제정(2018. 9.21.시행)된「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으로,

- <u>안 제2조</u>,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유족의 범위를 공무원재해보상법과 동일하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직계존비속이란 용 어를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순화하였으며, (안제2조)
- <u>안 제3조</u>,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으로,
- <u>안 제5조</u>, 장애의 기준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의 "장애등 급"이란 용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의 "장해등급" 으로 변경하였고.
- <u>안 제9조</u>에서는 보상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의 개정과 보상심의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순화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끝.

4. 질의 및 토론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붙** 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 란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을 말한다.
- 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 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 ②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 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

- 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함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 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2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권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 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운대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 2. 의회협력 업무 소관부서의 장 1명
 - 3. 의무직공무원 1명
 -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 ③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본

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 회협력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	제 호							처리기간		
수			<u> </u>	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서	15일		
보싱	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Ž	전화번호		
	구 자	청구	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 선 수 금융	령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 병 년월일시				
	병원인 및 생 상 황									
	부산광역시 같이 청구합		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구 지급에 관한 조i	례」저	6조에 따라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5	돈는 인)		
[첨녀	쿠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	진단서,	사망자의 가족	족관계증명	명서, 유족임을 입증	하는 서	l류 각 1부		
2.	장애와 상해의	의 경우	: 상병	경위서, 병원	진단서(징	애의 경우 장애진단	· 단서),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치료비 청구서(치료기관) 각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의 경우 공통서류)										
위의	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해유	대구청장 귀	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장 (직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 제 호	_									처리	기간
÷		의원	! 상해	등 보	상금	청-	구 싣	! 의 결	과	즉	시
보 상 대 상 의 원	성	명				,	생년월	길일			
보 상 금 청구내용	□ 사망	-	□ 장애		상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심 의 회	<결 <결정 c <심의 f] 명 〉								
심 의 결 과	직 위	성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n 1 E 1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7. 문현신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 문현신 조영진 정순세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이명원)

나. 회 부 일 자 : 2019. 6. 7.

다. 상 정 일 자 : 2019. 6. 13.(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현신 의원)

가. 제안이유

O 해운대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실명제를 통한 책임있는 수행은 물론 용역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 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제안이유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O 적용범위(안 제3조)
- 용역의 사전 검토 사항(안 제4조)
- O 용역실명제 시행(안 제5조)
- 용역결과의 공개(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실명제를 통한 책임있는 수행은 물론 용역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을 적용하여 용역실명제와 용역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정책연구용역을 공개함으로 인해 구의 정책·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에 대한 우려는 안 제6조에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에 명시되어 있어 운영상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나 단순 반복 적인 용역 등 대해서는 안 제3조 적용대상에 예외규정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붙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활용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구에서 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 한다.
-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 (www.prism.go.kr)을 말한다.
-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발주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용역의 사전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제5조(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 감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 ② 제1항의 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제6조(용역결과의 공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용역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용역 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3.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6. 3.

다. 상 정 일 자 : 2019. 6. 13.(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실천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O 공유재산심의회에 당연직 위원 규정 삭제
- O 공유재산심의회 보궐직 위원의 임기 규정 부분 삭제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에 대한 내용 수정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부분 삭제
-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을「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맞게 수정
- O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에 맞게 수정
- O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 제1호 개정 사항을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 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실천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 안 제5조의2제3항 및 제5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 당연직 위원 규정 및 보 궐직 위원 임기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안 제26조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용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 기업의 대부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부분을 삭제함.
-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에서는 채광물의 매각대금 산정방식과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관련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26조제4항에서는 마을 기업 등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붙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제5항 중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영 제9조제4호·제23조제2호·제29조제1항제7호·제30조제1항·제32조제3항·제35조제2항·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따른"을 "이 조례에서의"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석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4항 및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토지·건물의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따른다.
-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전용 · 공용면적 합계)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제26조제1항 중 "영 제35조제2항 및"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고도의"를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대부료를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7. 이상곤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 이상곤 조영진 김혜진)

나. 회 부 일 자 : 2019. 6. 7.

다. 상 정 일 자 : 2019. 6. 13.(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곤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지원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정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과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만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O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O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O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안 제4조)
- O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안 제5조 및 제6조)
- O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내지 제12조)
- O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O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식생활 교육의 방향설정과 5년마다 계획 수립한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계획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

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는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하여 심의내용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4조는 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하여전문성 있는 교육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식생활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범국가적으로 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법을 제정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식생활 교육지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2항에 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7조제2항의 '제5호'를 '제6호'로 함
- O 제7조제2항의 '제5호'를 신설

제 정 안	수 정 안 (문현신의원)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에 관한 사항	에 관한 사항			
2. 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	4.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			
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5.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6. 그 밖의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붙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의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 들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 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4. "학교"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5. "유치원"이란 구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 6. "어린이집"이란 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문화의 계승과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② 식생활 교육은 보육교직원, 교육관계자,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및 관련 기관 단체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④ 식생활 교육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농어업 및 먹을거리의 소중함,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제5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립한다.
 -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6.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 7.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구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구 계획의 추진실적을 토대로 실시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표설정의 적절성
 - 2. 목표 달성도
 -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 4. 추진사업의 적절성
 -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운 대구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5.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의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과장
 - 2. 해운대구 소통협력과장, 환경위생과장, 가족복지과장
 -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관련 업무 담당과장
 - 5.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 6.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 7. 관내 학교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 2.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으로 부정부패에 연루된 때
-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 3.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4.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5.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 6.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3.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9. 6. 3.

다. 상 정 일 자 : 2019. 6. 19.(제5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위생과장)

가. 제안이유

- O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친환경 전기자동 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전기자동차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전기자동차 운행지원 및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O 전기자동차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O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친환경 전기자동 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O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기본 방향을 수립시행하고 충전시설 구축과 구매자에 대해 경비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 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공영주차장 등 주차요금

감면지원과 업무용 자동차 구매시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전시설 확대 및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2018.12월 국토해양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화를 한 반면, 우리구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부산시 자 치구 중 가장 많으나 충전시설은 타 구에 비해 많지 않은 실정이며, 미 세먼지의 주요 발생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부 단위 지원사업 외에 구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따른 지원 근거는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붙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 2. "충전시설"이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 계획)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 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
 -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 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 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 3.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운대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3.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9. 6. 3.

다. 상 정 일 자: 2019. 6. 13. (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O 해운대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O 위탁사무: 해운대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O 위탁조건: 협약에 의함

O 위탁방법: 위·수탁관리 협약체결

O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O 본 동의안은 해운대시니어클럽 사무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하여 위탁기관을 새로이 선정하고자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해운대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근거 하여 2013년에 설치되었으며 2013. 8. 2.일 사회복지법인 의안복지재단에 3년간 위탁하였고, 2016. 8. 2 재위탁하여 2019. 8. 1 재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O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19.8.2. ~ 2024.8.1.까지 5년간임
- O 해운대시니어클럽 민간위탁은 『노인복지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노인 일자리수요에 부응하고,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개발과, 체계적인 노인교육훈련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중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판단됨
- 다만, 수탁자 선정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 개발 연구」에 따른 심사지표에 따라 공정성을 기하여 관리능력을 갖춘 우수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첨 부 : 해운대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끝.

- 위탁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

해운대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계획

□ 위탁사무

- 해운대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 O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그 밖에 해운대구청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19. 8. 2. ~ 2024. 8. 1.(5년간)

○ 수탁자격 : 지역사회복지, 노인일자리사업 경험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O 위탁방법 :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추진일정

○ 2019. 5월 :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

○ 2019. 6월 : 구의회 심의, 모집 공고 및 접수

O 2019. 7월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위탁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

해운대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계획

해운대시니어클럽의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노인일자리전담 기관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제17조의3, 제17조의4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9조의2, 제23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2 위탁사무

- 해운대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그 밖에 해운대구청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規 시니어클럽 현황

시설명	관장	법인명	최초 지정일	종사자	예산지원
해 운 대 시니어클럽	천영권	사회복지법인 의안복지재단 (대표자 이복휘)	2013.7.3.	총 17명 (정규직 6, 계약직 11)	387,292천원 (시비 242,998 구비 144,994)

- 최초위탁 : 2013. 8. 2. ~ 2016. 8. 1.(3년)
- 1차 연장위탁 : 2016. 8. 2. ~ 2019. 8. 1.(3년)

4 위탁개요

□ 신청자격

- 지역사회복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경험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2019. 8. 2. ~ 2024. 8. 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종합심사

□ 위탁조건

-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위탁운영 약정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 공고일 및 위탁운영 약정서 체결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 고용승계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서'로 별도 체 결

5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고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	2019. 5. 24.한	
구의회 심의	2019. 6. 12. ~ 6. 25.	
수탁자 모집공고	2019. 6. 26. ~ 7. 10.	
신청 접수	2019. 7. 8. ~ 7. 10.	우편접수 불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019. 7. 16.	
결정 통지	2019. 7. 18.한	
위탁운영 약정서 체결	2019. 7. 19.	위탁기간 : 5년

□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 및 심의

- 해운대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5월중)
- 2019. 6월 해운대구의회 제242회 정례회에서 심의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 6. 26. ~ 7. 10. (15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고문(안) 붙임1 참조
- 접수기간 : 2019. 7. 8. ~ 7. 10. (3일간)
 - ※ 근무시간(09:00 ~ 18:00)내,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자격 : 지역사회복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경험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 레」 제23조에 의거 기 구성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로 갈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3조(설치 및 기능)

- 구청장은 노인복지 시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2. 제9조제2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 운영과 위탁에 관한사항

○ 노인복지정책위원회 명단

연 번	소 속	이 름	직 위	비고	
1	구청	강태기	부구청장	위원장	
2	구청	김용전	주민복지국장	부위원장	
3	구청	김신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	
4	구청	김용욱	보건정책과장	위원	
5	해운대구의회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		위원	
6	신라대학교	안홍순	사회복지학부 교수	위원	
7	동서대학교	남일재	사회복지학부 교수	위원	
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미애	부.울.경본부장	위원	
9	어진샘노인복지관	최윤정	관장	위원	
10	사회복지법인느티나무	박인철	대표이사	위원	

※ 현 해운대시니어클럽 관장은 수탁 관계자로 심의위원에서 제외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노인복지정책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7. 16.(화) 15:00 ▷ 예정

○ 장 소 :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3층 제1세미나실

○ 참석대상 : 노인복지정책위원회 10명(심의위원), 수탁신청 법인

대표 및 시설장 등

○ 진행순서 (※회의 시간은 당일 상황에 따라 탄력 진행)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사회자 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자 생표 10분, 실청기관 5분) 위 위	
15:00 ~ 15:05	5″	▷ 위원 소개	사회자	
15:05 ~ 15:10	5″	▷ 위원장 인사말씀, 개회선언	위원장	
15:10 ~ 15:15	5″	▷ 위탁심의안건 제안 설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15 ~ 15:20	5″	▷심사기준 설명	사회자	
15:20 ~ 15:50	30 ″	▷ 운영계획 보고 및 질의응답	수탁 신청기관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15:50 ~ 15:55	5″	▷토의 및 채점	위원	
15:55 ~ 16:00	5″	▷심사집계·결과 보고, 수탁자 결정	위원장	
16:00		▷ 폐회	위원장	

□ 수탁자 선정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방법 : 심사항목 배점표에 따른 점수 평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 개발 연구」에 따른 심사지표 참조

심사영역	심사문항	심사항목	항목수	배점	비고			
	A. 법인의 적격성	Al. 법인형태와 정관	3	5	정량			
가. 공신력	(10점)	A2. 이사회 구성	4	5	정량			
(25점)	B. 법인의 시업능력	B1. 법인의 사업역량	3	5	정량			
	(15점)	B2. 법인대표의 추진의지	3	10	정성			
나.	C. 인적능력	Cl. 시설장의 전문성 및 추진의지	8	15	정량2 정성6			
사업수행	(30점)	C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4	15	정성			
능력 (50점)	D. 운영능력 (29점)	D1. 시설(사업)운영실적	1	4	정성			
(59점)		D2. 향후 운영계획	9	25	정성			
	E.	El. 법인 전입금 확보 정도	1	4	정량			
다.	재정부담	재정부담 E2. 확보방법의 구체성	1	4	정량			
재정능력 (16점)	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E3. 법인의 기본재산	1	4	정량			
	(16점)	E4. 법인의 부채비율	1	4	정량			
	합 계 39 100 -							
* 정량지표 : 사전 평가 * 정성지표 : 심의당일 심의위원 평가								

- 최종 수탁자 선정 기준
 - 최소조건을 충족하고 심의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중 최고 점을 획득한 법인이나 단체
 - ☞최소조건 : 총 배점의 70% 초과 및 영역별 배점의 50% 초과 충족
 - 동점 발생 시 심의위원 표결로 결정하고 즉시 공개
- 신청 법인이나 단체가 1개일 경우도 심의, 최소조건 충족 시 선정
- 심의결과 발표 및 공개
 - 심의 의결 후 즉시 "결과" 발표 및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 결정통지 : 개별 서면 통지 ▷ 2019. 7. 18.한

6 양후계획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현판 제작
 - 제작(안)

- 해운대시니어클럽 수탁자선정 심의를 위한 -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개최

2019. 7. 16.(화) 15:00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시무관리비

○ 회의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350,000원(금삼십오만원)

- 산출기초 : 70,000원 × 5명 = 350,000원

- 예산과목 : 노인복지 지원, 재가노인 복지지원, 노인복지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위탁운영 약정서 체결

- 일 시 : 2019. 7. 19.(금)

- 계 약 자 : 해운대구청장 ⇔ 법인대표자

- 위탁계약기간 : 2019. 8. 2. ~ 2024. 8. 1. (5년간)

-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름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6. 7. 김혜진, 이상곤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19. 6. 7.

다. 상 정 일 자: 2019. 6. 13. (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김혜진 의원)

가. 제안이유

O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각종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O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O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O 노인교육 사업의 내용(안 제6조)
- O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노인교육사업 등의 심의
- 사업비 지원 및 포상 등(안 제9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2019.4월 현재 우리구 65세이상 노인인구는 63,937명으로 전체인구 408,384명의 15.6%를 차지하고 있고, 60~64세 인구도 24,963명에 이르러 향후 5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27.1%로 급격히 증가하여 노인교육 수요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O 반면, 노인교육 시설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등에서 3,000여명을 수용하고 있으나 노인인구의 4.7%에 불과해 노인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 O 노인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교육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배는 없으며, 평생교육 기회제공 및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첨 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교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 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신고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 3.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
 - 4.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운용 계획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노인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제5조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6조의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운대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6. 7. 김백철, 박성식, 문현신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19. 6. 7.

다. 상 정 일 자: 2019. 6. 13. (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김백철 의원)

가. 제안이유

O 해운대구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도로, 주택, 차량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을 통해 장려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수거보상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O 조례의 목적 및 보상금 지급대상(안 제1조 및 제2조)
- O 보상금 지급 기준(안 제3조)
 - 현수막: 3,000원(4m² 이상, 가로형). 그 외 2,000원
 - 벽보, 명함형 전단지 : 장당 5원
 -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인당 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O 지급대상(안 제4조)
 - 현수막은 장비와 인력을 갖춘 단체로 부산광역시 및 해운대구 협약 체결
 -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주민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
- O 보상금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안 제5조 및 제6조)
- O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안 제7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O 현재 우리구에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와 부산시 계획에 의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 O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는 타당하다 고 판단되며,
- O 예산확보를 원활히 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은 물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 O 현수막 보상금 지급 대상을 "부산광역시 및 해운대구와 ~ 협약을 체결한 단체"로 제한한 제4조의 규정에 대하여 설명과 검토가 필요해 보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첨 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관내 전 지역의 건물외벽·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및 벽보
 - 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하 "보상금" 이라 한다)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현수막(4㎡이상, 가로형) : 장당 3,000원
 - 2. 현수막(4㎡이하, 족자형) : 장당 2,000원
 - 3. 벽보 : 장당 5원
 - 4. 명함형 전단지 : 장당 5원
 - ②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인당 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지급대상) ① 제3조제1항중 현수막은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부산 광역시 및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단체에 지급한다.
 - ② 그 외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신청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현수막 수거보상금은 구와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
 - 2. 그 외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 부서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 지급) ①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보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예산의 세부적인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구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 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 3.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
 - 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5.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가 수거한 광고물
 -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재원 확보)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19		· ·	성별	
신 청 자	주 소	해운대구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폰)
수거 현황	○ 수거○ 수거	·		~ 장	20				
확인 결과	수거량		장		원	확인지 성명 :	• 직급		(인)
계좌 번호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	급주	
첨부 서류	통장 시	-본					·		
비고									

위와 같이 수거보상금 신청하오니 계좌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신청자 :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3.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9. 6. 3.

다. 상 정 일 자: 2019. 6. 13. (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O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반여종합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O 위탁대상 : 반여종합사회복지관

O 위탁범위 :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

O 위탁조건 : 협약에 의함

O 위탁방법 : 위·수탁관리 협약체결

O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O 본 동의안은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은 2009. 10. 26일 개관하였으며, 2009.10.1~ 2014.9.30.까지 "학교법인설봉"에서 위탁받아 운영하였으며, 2014.10.1.~2019.9.30.까지 재위탁 받아 현재 운영중에 있음.
- 2019.9.30.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기존 운영업체인 "학교법인설봉"에 재위탁하고자하는 것으로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위탁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O 개관이후 큰 흠결 없이 반여지역 복지정책의 중심 역할을 해오면서 오랜 경험을 통하여 지역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지식을 갖춘 현 운영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O 다만, 장기 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 부 :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우리구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만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위탁시설

시설명	소 재 지	종사자	면적 (m²)	위탁기간	수탁기관	관장	지원예산
반여종합 사회복지관	재반로226번길 13-73	26명	1,459	2014.10.1.~ 2019.9.30.	학교법인 설봉	김창근 (77.2.15.)	713,100천원 (시·구비)

Ⅱ 관련법령

- O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O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 O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O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규정

Ⅲ 위탁개요

- O 위탁대상 : 반여종합사회복지관
- O 위탁기간 : 2019.10.1.~2024.9.30.(5년)
- O 예산지원 : 복지관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 ※ 2019년 기준 연 713.100천원 (시.구비)
- O 위탁범위 : 복지관업무 및 시설물 관리 전반

₩ 재위탁 관련 부서의견

- 아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규정에 의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하고 있고,
-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관 선정 (갱신) 심사 기준에 의거 평가항목 사전 검토 결과 정량평가(배점 69점) 약 61점으로 평가 정성평가 (배점31점) 합산시 기준(70점) 이상 평가 예상
- 2009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큰 흠결 없이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여 반여 지역의 복지정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고 개발할 역량을 가진 현 수탁 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Ⅴ 향후 추진계획

- O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
 - ▷ 상정일시: 2019년 6월(제242회) 정례회에 상정
- **반여복지관 재위탁 신청** ▷ 신청기한 : 2019.6.28.한
- O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9명

- 위원장(1명) : 부구청장
- 당연직위원(2명) :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 위촉위워(5명) :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법률전문가 등

-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O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7.26.(금) 예정

▷ 장 소 :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내 (미정)

▷ 참 석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 9명

▷ 내 용 : 수탁자 심사 및 선정 등

O 수탁자 선정

- ▷ 참석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를 심사항목(붙임 심사지표)에 따라 심사하여 집계
-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집계표에서 각 법인별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위원 점수 합계 중 70점이상 획득시 재위탁 결정
- O 수탁자 선정 통보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19.7.31.

Ⅵ 행정사항

○ 재위탁 신청 접수 : 2019.6.28.한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 2019.7.12.한

O 수탁자선정위원회 개최 : 2019.7.26.(예정)

O 수탁 협약 체결 : 2019.7.31. 한

분임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 지표(갱신)

심사영역	심사문항	심사항목	배점	항목수	비고
가. 공신력 (20점)	A. 법인의 적격성	A1. 사회복지사업 수행 역량	3	3	정량
	합인의 작측성 (7점)	A2. 지도점검 및 감사 결과	4	2	정량
	B. 법인의 관리능력 및 추진의지 (13점)	B1. 위탁대상시설 관리	5	2	정량
		B2. 법인 대표의 추진의지	5	3	정성
		B3. 자부담 이행 수준	3	1	정량
인적분	_	C1. 직원의 전문성	10	4	정량
	C. 인적능력 (30점)	인적능력 C2.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		4	정량
		C3. 시설장 전문성 및 추진의지	10	8	정량2, 정성6
사업수행	D. 운영능력 (25점)	D1. 고객만족 평가결과	5	1	종령
I		D2. 시설평가 결과	5	1	정량
		운영능력 D3. 사업이행실적		1	정성
	(35台)	D4. 운영위원회 구성·윤용	5	3	정량
		D5. 향후 운영계획	10	9	정
다.	E. 다. 재정부담 재정능력 계획과 (15점) 자산보유 현황 (15점)			1	정량
재정능력		E2. 확보방법의 구체성	5	1	정량
		E3. 법인의 부채비율	5	1	정량
	합 합 계			45	_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 개별연구 발간: 부산복지개발원, 2017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11.

(임말숙,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19. 6. 11.

다. 상 정 일 자: 2019. 6. 13. (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임말숙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O 목적 및 적용범위(제1조 ~ 제3조)
 - 안전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명시
- O 안전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제4조 ~ 제 6조)
 - 매년 안전지원 기본계획 수립 규정
 -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 O 재정지원 및 포상 (제 8조 ~ 제 9조)
 -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 사업비 지원 명시
 - 실적 우수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포상 규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O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의원발의 한 것으로
- O 주요 내용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은 매년 안전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과 구민안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등 구민 안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없는 안전도시를 구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첨 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안.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교육 등 구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 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지원을 위하여 매년 구민 안전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의 추진목표와 방향
- 2. 안전지원사업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3.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5. 기타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조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지원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3.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9. 6. 3.

다. 상 정 일 자: 2019. 6. 14. (2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O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O 지원 대상(안 제3조)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해운대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는 출산(예정)가정
 - 소득기준 :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출산 가정
- O 지원 범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확인(안 제4조~제6조)
- O 지원 중단, 환수 조치 (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저출산·고령화기본법」,「모자보건법」등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임산부・ 태아 및 영유아 등에 대하여 "모자보건 증진" "경제적 부담 경감" "산후 도우미 지원"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부산의 사하구, 기장군 등 전국 23개 기초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의

경우 25개 기초치단체가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 O 핵가족화로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코자 제정하는 본 조례는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O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 및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 O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매년 7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해 보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첨 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이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 제4조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 함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 "정부지원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 3. "정부 지침"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1. 신청일 기준 해운대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예정)가정
 - 2. 정부 지침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예정) 가정
- 제4조(지원범위) 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는 매년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산모·신 생아 건강관리 표준을 준용한다.
 - ②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금액은 매년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준형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정부 지침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 서비스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준용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확인)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전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등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단한다.
-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홍보) 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홍 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서식 등은 정부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3.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9. 6. 3.

다. 상 정 일 자: 2019. 6. 14. (2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본 조례 중 장애등급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5조 제2항 제2호 중 "1급~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제2항의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을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으로 정한다"라고 개정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며,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장애등급 "1~3급"은 장애정도 기준의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첨 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1급~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	②
고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공용	
·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50퍼센	
트를 감경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	2
록된 장애인(<u>1급~3급 장애인</u> 은	<u>심한 장애인</u>
보호자 1명 포함)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3.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9. 6. 3.

다. 상 정 일 자: 2019. 6. 14. (2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가족복지과장)

- 가. 제안이유
- O 상위법인「성별영향평가법」개정에 따른 용어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나. 주요내용

- O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O 특정성별영향평가 신설 (안 제4조의2)
- O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안 제8조의2.3.4)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O 주요 개정내용은
 -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고
- 제4조의2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2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별영향 평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제8조제2항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 평등위원회에서 대신 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8조의2(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의3(위원장의 직무), 제8조의3(위원회의 운영)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O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첨 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8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1.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의 장, 예산관련 담당부서의 장
 -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목,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제2항제4호, 제5조 제목,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 제목,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목,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제10조 제목,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대2호,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제7호,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정호,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 로 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u>부산광역시 해운대구</u>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u>부산광역시 해운대구</u> <u>성별영향평가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성별영향분석</u> 평가법」에 따라 <u>성별영향분석평가</u> 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성별영향평가</u> 법」에 따라 <u>성별영향평가</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부산광역시 해 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 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 석·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략)	1. <u>"성별영향평가"</u>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u>성별</u> 영향분석평가(이하"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u>분석평가</u>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u>성별</u> <u>영향평가</u> 의

제4조(분석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u>「성</u> 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u>분석평가</u>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4.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3. (생략)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u>분석평가</u>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제5조(분석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u>분석평가</u>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3. (생략)

제4조(<u>성별영향평가</u> 대상) ① 구청장은 <u>「성별영향평가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u>성별영향평가</u> 의
1.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3. (현행과 같음) 4 <u>성별영향평가</u>
제4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 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성별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 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u>성별영향평가</u> 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시기에 <u>성별영향평가</u> 를 실시한 다

1. ~3.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3. (생략)

제7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 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 제8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기능) 구청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삭제) 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 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 다.

(신설)

제6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 서에는 -----

1. ~3. (현행과 같음)

제7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평가위원 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영향평 가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 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 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1.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의 장, 예산관 련 담당부서의 장
-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

(신설)

(신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조 항 신설)

하기 위하여 담당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

는 사람

- 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 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

제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 임무)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 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담당국장을 성별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 1. (생략)
-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 3.-----성별영향평가----책 반영에 관한 사항
- 4. (생략)
-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 6. (생략)
- 7.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 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분석평가의 교육) 구청장은 분 제11조(성별영향평가의 교육) 구청장 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 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다

으로 지정하고,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 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 하다.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2.----<u>성별영향평가</u>----성별영향평가-----

 - 4. (현행과 같음)
 - 5.----성별영향평가--
 - 6. (현행과 같음)
 - 7.----성별<u>영향평가</u>-----

성별영향평가----

실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6. 3.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9. 6. 3.

다. 상 정 일 자: 2019. 6. 14. (2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가족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O「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본 조례 중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O 안 제8조제2항제2호 중 "(1~3급)"을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제2항의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을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제2조 별표1)으로 정한다"라고 개정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며,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장애등급 "1~3급"은 장애정도 기준의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첨 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1~3급)"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 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할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2
장애인 <u>(1~3급)</u>	<u>(심한 장애인)</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1.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9. 5. 1.

다. 상 정 일 자: 2019. 5. 9. (제241회 제1차 회의)

2019. 5. 10. (제241회 제2차 회의 보류)

2019. 6. 14. (제242회 제2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가족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 O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의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힐스테이트위브어린이집(가칭)

O 위탁범위: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

O 위탁조건: 협약에 의함

이 위탁방법: 위·수탁관리 협약체결이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국·공립으로 신설 예정인 가칭 힐스테이트위브어린이집을 향후 민간위탁 방법으로 운영 하고자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힐스테이트위브는 2015.10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아파트로 2019. 2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 받아 관리동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을 10년간 무상임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신청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로 부터 기능보강 사업비 및 기자재비 1억 2천만원 확정 내시된 상태이며, 2019.11.1.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2019. 5월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려는 것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임
- O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영유아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보육기능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 O 다만, 수탁자 선정시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라 공정성을 기하여 관리능력을 갖춘 운영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첨 부 :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끝.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계획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및 공동주택 관리동 내 공립 어린이집 신설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및 제12조,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 2, 시행규칙 제29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9조의 3
-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및 제5조
- O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 2019년 보육사업안내(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2 기본방향

-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정히 검증, 심사의 신뢰성 극대화
- 선정기준의 객관화로 심사위원의 자의적 심사방지 및 공정성 확보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위탁대상

연 번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정원 (현원)	면적 (m²)	위탁기간	위탁체	원장 (생년월일)	비고
1	송정해송 어린이집	해운대로 1188, 204동 1층(송정동, 송정2휴먼시아)	32 (24)	137	2016.9.1.~ 2019.8.31	동해 (사회복지 법인)	선성원 (63.10.16)	2019.8.31 2차재위탁 만료
2	반여2동 어린이집	재반로226번길 13-73 (반여종합 사회복지관 내)	70 (70)	301	2014.10.1. ~ 2019.9.30	설봉하원 (학교법인)	이명희 (75.09.09)	2019.9.30. 재위탁 만료
3	힐스테이트 위브 어린이집 (가칭)	좌동순환로 433번길 30, 해운대힐스테 이트위브@ 104동	48 ※예상 정원수	266			·시설 어린C 설치(무상임C	

4 위탁체 선정방법

- 송정해송어린이집은 2010.9월 공개모집하여 현재 1·2차 재위탁을 거쳐 2019.8.31.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
- 반여2동어린이집은 2009.10월 공개모집하여 현재 재위탁을 거쳐 2019.9.30.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
- ② 힐스테이트위브@는 2015.10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아파트로 2019.2월 입주 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설치요청함. ☞ **입주민 찬성 동의율**: 52.3%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해운대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4조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예정)는 공개경쟁의 방법으 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운영실적 등 을 고려하여 1회까지 재위탁 가능함.
- 따라서 현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거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공고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함.

5 | 공개모집 세부계획

○ 모집대상 : 송정해송어린이집, 반여2동어린이집, 힐스테이트위브어린이집

O 위탁기간

어린이집명	위탁기간	비고
송정해송어린이집	2019.09.01. ~ 2024.08.31	
반여2동어린이집	2019.10.01. ~ 2024.09.30	
힐스테이트위브어린이집(가칭)	2019.11.01. ~ 2024.10.31	리모델링 공사기간 등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

O 위탁대상자 공개모집

▷ 모집방법 : 구청 및 해운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

▷ 공고기간 : 2019.5.20. ~ 2019.6.10.

▷ 공고내용 : 위탁운영 개요, 신청자격, 위탁조건, 접수기간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선정방법 및 결과 통보 등

※ 1인 이하 신청시 재공고하며, 재공고시에도 위탁운영신청자가 1인이하인 경우 심사를 통해 위탁운영자 선정

○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심사

▷ 개최일자 : 2019.6.28.(예정)

▷ 심사기관 : 해운대구 보육정책위원회

▷ 심사기준 : 위탁운영체(신규·변경) 선정관리 표준안

ネ カ	어린이집	운영체의 대표 및	운영체의 시설	운영체의	운영체의
총점	운영계획	원장 전문성	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100점	40점	35점	10점	10점	5점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신규 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심사기준은 향후 변경 있을 수 있음.(모집공고 전 확정)

▷ 심사방법

- 자기소개와 심사기준표에 의한 제출서류 설명 및 질의·응답
- 신청자는 해운대구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PPT로 발표
 - ※ 불참시 위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수까지 계산하고 70점이상으로 함)
- 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 의 전문성, 시설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운영체와 특수관계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척

6 양후계획

- 구의회 임시회 상정, 위탁 동의절차 이행 : 2019.5월중
-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 2019.5월중
-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19.6.28(예정)
- 위탁운영체 계약체결 : 2019.7월중. 끝.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9. 6.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6. 3.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9. 6. 3.

다. 상 정 일 자: 2019. 6. 21.(제2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회계법」제14조 규정에 의거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승인 요청

나. 주요내용

- O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 회계 예산 집행 후 2018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 검사기간 : 2019. 4. 5. ~ 4. 24.(20일간)

- 검사대상 : 전부서

- 검사위원 : 김백철 구의원, 김삼현 세무사, 김대일 회계사,

박도근 전직 공무원

O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제출 : 2019. 4. 24. - 결산검사위원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Ŝ	회계별	예산현액 ①	세입결산액 ②	세출결산액 ③	세계잉여금 ④=②-③	이월사업비 ⑤	보조금 반납액⑥	순세계잉여금 ⑦=④-⑤-⑥
	2018	613,148,156	620,666,996	533,010,175	87,656,821	39,051,037	5,556,871	43,048,913
 계	2017	596,311,025	599,989,460	521,630,842	78,358,618	34,251,074	6,282,364	37,825,180
	증감액	16,837,131	20,677,536	11,379,333	9,298,203	4,799,963	-725,493	5,223,733
	증감률	2.82%	3.45%	2.18%	11.87%	14.01%	-11.55%	13.81%
	2018	589,816,392	595,903,175	522,636,213	73,266,962	36,839,405	5,250,046	31,177,511
일 반 회 계	2017	575,126,665	577,425,687	511,539,209	65,886,478	31,619,585	6,230,943	28,035,950
회 계	증감액	14,689,727	18,477,488	11,097,004	7,380,484	5,219,820	-980,897	3,141,561
	증감률	2.55%	3.20%	2.17%	11.20%	16.51%	-15.74%	11.21%
	2018	23,331,765	24,763,822	10,373,962	14,389,860	2,211,632	306,826	11,871,402
특별	2017	21,184,360	22,563,773	10,091,633	12,472,140	2,631,490	51,420	9,789,230
회 계	증감액	2,147,405	2,200,049	282,329	1,917,720	-419,858	255,406	2,082,172
	증감률	10.14%	9.75%	2.80%	15.38%	-15.96%	496.71%	21.27%

※. 예산현액(①) = 2018년도 예산액 +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액

구 분	순세계잉여금 ⑦=⑦=Û+印	초과세입금 땅=②-①	불용액 따=⑦-나	
합계	43,048,913	7,518,840	35,530,073	
일반회계	31,177,511	6,086,783	25,090,728	
특별회계	11,871,402	1,432,057	10,439,345	

^{*} 순세계잉여금 43,048,913(⑦)= 초과세입액 7,518,840(②-①) + 불용액 35,530,073

○ 세입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u>?</u> (%)
	1 2	(가)	(나)	(다)	(라)	(매=(나-다-라)	(다/기)	(다/나)
	합 계	613,148,156,130	651,637,110,129	620,666,996,475	3,961,385,360	27,008,728,294	101.2	95.2
	소 계	589,816,391,510	617,039,282,530	595,903,174,700	3,619,609,600	17,516,498,230	101	96.6
일	지방세수입	121,088,000,000	126,610,643,830	123,717,771,670	186,659,990	2,706,212,170	102.2	97.7
바.	세외수입	33,001,787,000	52,900,067,050	34,656,831,380	3,432,949,610	14,810,286,060	105	65.5
회	지방교부세	10,063,440,000	11,936,571,120	11,936,571,120	-	-	118.6	100
,	자 치 구 조정교부금등	31,778,753,000	31,754,555,000	31,754,555,000	-	-	99.9	100
계	보 조 금	327,990,735,000	327,943,767,850	327,943,767,850	-	-	100	1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5,893,676,510	65,893,677,680	65,893,677,680	-	-	100	100
	소 계	23,331,764,620	34,597,827,599	24,763,821,775	341,775,760	9,492,230,064	106.1	71.6
특	주 차 장	18,529,478,620	28,264,118,349	19,988,844,629	331,910,830	7,943,362,890	107.9	70.7
별	의료급여	1,020,130,000	2,551,504,664	1,077,400,644	9,840,780	1,464,263,240	105.6	42.2
	지하수 관리	1,813,507,000	1,786,009,430	1,768,039,640	-	17,969,790	97.5	99.0
회	기 반 시 설	324,558,000	325,871,920	325,871,920	-	-	100.4	100
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212,128,000	231,040,196	164,381,902	24,150	66,634,144	77.5	71.1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1,431,963,000	1,439,283,040	1,439,283,040	-	-	100.5	100

○ 세출결산내역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액	구비집행잔액
	합 계	613,148,156,130	533,010,174,850	39,051,037,210	5,588,845,409	35,498,098,661
01	소 계	589,816,391,510	522,636,212,670	36,839,405,420	5,282,019,789	25,058,753,631
일 반	일반공공행정	24,011,433,000	20,586,982,820	2,710,070,670	4,400,745	709,978,765
회 계	공공질서 및 안전	20,009,294,770	14,077,288,310	5,782,377,720	77,615,370	72,013,370
	교 육	6,881,683,690	6,873,326,200	-	-	8,357,490

	문화 및 관광	22,925,156,290	18,847,428,450	3,661,097,520	16,728,223	399,902,097
	환경보호	22,535,692,800	21,698,518,510	484,553,380	19,297,216	333,323,694
	사회복지	326,726,679,700	314,234,779,420	6,799,360,820	4,297,539,387	1,395,000,073
	보 건	16,656,978,000	13,352,358,930	2,493,799,790	495,531,335	315,287,945
	농림해양수산	4,618,832,000	3,613,916,130	853,163,370	62,816,791	88,935,709
	산업.중소기업	1,669,482,500	926,742,140	713,730,000	8,796,020	20,214,340
	수송 및 교통	23,423,077,330	16,125,954,990	6,876,756,580	32,989,390	387,376,370
	국토 및 지역개발	16,960,158,430	9,715,805,770	6,389,659,570	95,657,094	759,035,996
	예비비 18,250,552,000		-	-	-	18,250,552,000
	기 타	85,147,371,000	82,583,111,000	74,836,000	170,648,218	2,318,775,782
	소 계	23,331,764,620	10,373,962,180	2,211,631,790	306,825,620	10,439,345,030
	주 차 장	18,529,478,620	7,925,609,110	2,211,631,790	262,151,700	8,130,086,020
특	의 료 급 여	1,020,130,000	972,104,780	-	41,123,340	6,901,880
별 회	지하수 관리	1,813,507,000	48,965,270	-	-	1,764,541,730
계	기 반 시 설	324,558,000	-	-	-	324,558,000
	주거환경개선 사업	212,128,000	2,174,700	-	-	209,953,3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431,963,000	1,425,108,320	-	3,550,580	3,304,100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구 분	순세계잉여금 (가)=(나+다)-라	초과세입금 (나)	집행잔액 (구비+보조금) (다)	보조금반납액 (라)
합 계	43,048,913,297	7,518,840,345	41,086,944,070	5,556,871,118
일 반 회 계	31,177,511,112	6,086,783,190	30,340,773,420	5,250,045,498
특 별 회 계	11,187,402,185	1,432,057,155	10,746,170,650	306,825,620
주 차 장	9,589,452,029	1,459,366,009	8,392,237,720	262,151,700
의 료 급 여	64,172,524	57,270,644	48,025,220	41,123,340
지하수 관 리	1,719,074,370	△45,467,360	1,764,541,730	-
기 반 시 설	325,871,920	1,313,920	324,558,000	-
주거환경개선사업	162,207,202	△47,746,098	209,953,300	-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10,624,140	7,320,040	6,854,680	3,550,580

2)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

(단위 : 건, 원)

구 분	회계별	예산액	건수	금 액
예산의 이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없음	
에 나이 되으	계	12,904,927,000	25	194,023,000
예산의 전용	일반회계	12,078,908,000	24	192,095,000
* 세부내역 별첨	특별회계	826,019,000	1	1,928,000
에 사이 이 레	일반회계	4,277,764,400	54	4,277,764,400
예산의 이체	특별회계	-	-	-

3)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원)

	F관 	사 업 명	예산과목		출결정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u></u>	<u> </u> 부서	1 8 0	11 12 -1 1	일자	금액	(이월액)	8061	16 111
	합 계 (5건))		93,618,000	90,449,600	3,168,400	
	도사재생 추진단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연구용역비	2018. 10. 1.	48,000,000	(45,000,000)	3,000,000	'도시재생뉴딜사업활 성화 계획수립 용역' 예산지원
일	재무과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8. 10.24.	21,218,000	21,218,000	0	2018.11.5.자 부서신설에 따른 물품구입
반 회	안전총 괄과	재난지원금 지급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018. 12.27.	20,000,000	20,000,000	0	2018년 폭염피해자(2명) 재난지원금 지급
계	의회	의사운영 지원	시설비	2018. 5. 4.	2,000,000	1,905,000	95,000	구의원(1명) 증원에 따른 의원실 시설개선비 지원
	사무국	의사운영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18. 5. 4.	2,400,000	2,326,600	73,400	구의원(1명) 증원에 따른 의원실 사무집기 구입 등 지원
특별 회계		해 당 없 음						

4)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합계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합계	136	39,051,037,210	4	6,303,710,480	76	25,712,780,140	56	7,034,546,590
일반회계	131	36,839,405,420	4	6,303,710,480	73	23,781,693,290	54	6,754,001,650
특별회계	5	2,211,631,790	ı	-	3	1,931,086,850	2	280,544,940

5) 기금 결산 내역

(단위 : 원)

기 금 별	전년도말 현재액 (가)	당해연도 조성액 (나)	당해연도 사용액 (다)	당해연도말 현재액 (라)	증감비율 (라-가/가)
합 계	18,584,927,704	2,068,512,489	1,095,653,790	19,557,786,403	5.2%
식품진흥기금	313,115,840	76,484,970	61,445,880	328,154,930	4.8%
옥외광고정비기금	268,544,540	354,954,840	350,400,660	273,098,720	△4.5%
사회복지기금	3,202,972,503	57,148,310	201,645,500	3,058,475,313	10%
자 활 기 금	1,469,129,437	204,890,083	56,585,000	1,617,434,520	△1.1%
양성평등기금	505,122,734	9,077,416	15,000,000	499,200,150	12.6%
재난관리기금	4,706,641,426	1,008,036,970	410,576,750	5,304,101,646	4.4%
신청사건립기금	8,119,401,224	357,919,900	-	8,477,321,124	1.6%

6) 재무제표 요약

재정운영 재정상태

구 군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8년	1,919,202,784	32,921,676	1,886,281,108	541,208,798	501,081,593	△40,127,205
2017년	1,879,086,315	35,656,975	1,843,429,340	502,047,295	472,785,620	△29,261,674
증 감	40,116,469	△2,735,299	42,851,768	39,161,503	28,295,973	△10,865,530
	•		•		•	

7) 채권·채무 결산 내역

(단위 : 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ć	합계	5,653,025,460	185,124,280	195,301,452	5,642,848,288
	일	반 회 계	3,631,299,920	343,000	6,448,230	3,625,194,690
	특별 회계	소 계	1,400,318,710	135,047,280	71,102,750	1,464,263,240
채권	회계	의료급여기금	1,400,318,710	135,047,280	71,102,750	1,464,263,240
		소 계	621,406,830	49,734,000	117,750,472	553,390,358
	기금	사회복지기금	261,406,830	13,400,360	11,416,832	263,390,358
		자활기금	360,000,000	36,333,640	106,333,640	290,000,000

※ 채무내역 없음

8) 세입·세출외 현금 내역

(단위 : 원)

종 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증가액	지출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5,886,055,672	20,782,968,930	19,871,006,700	6,778,017,902
보증금	91,138,475	374,834,220	366,879,270	99,093,425
보관금	5,499,080,006	20,353,254,120	19,345,141,440	6,507,192,686
잡종금 등	275,837,191	54,880,590	158,985,990	171,731,791

9) 공유재산 결산내역

(단위 : 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증가액	감소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289,400,146,400	39,147,839,066	9,983,086,166	1,318,564,899,300
	소 계	1,269,657,232,010	38,753,159,946	9,920,013,166	1,298,490,378,790
	공용재산	252,630,622,781	4,757,634,550	864,843,670	256,523,413,661
행정 재산	공공용재산	1,017,026,609,229	33,995,525,396	9,055,169,496	1,041,966,965,129
	기업 용 재산	-	-	-	-
	보존용재산	-	-	-	-
	일반재산	19,742,914,390	394,679,120	63,073,000	20,074,520,510

10) 물품 결산내역

(단위 : 개, 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취득액	처분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므표	수량	1,108	89	61	1,136
물품	금액	7,323,941,194	389,027,280	193,270,572	7,519,697,902

4. 검토의견

-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성립된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하여 세입의 징수사항과 세출의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어 불합리한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 중 세입부분은 예산현액(6,131억 4,816만원) 대비 실제 수납율이 101%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재원을 충분히 사업비에 배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순세계잉여금(430억 4,891만원)은 세수 추계 등의 문제로 매년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세입결산 미수납액(270억 873만원, 불납결손액 39억 6,139만원 제외)의 발생 규모(징수결정액의 4.8%, 예산현액의 4.4%)를 감안할 때, 미수납액 감소대책과 징수 확보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임.
- 세출결산 부분에서는 결산서 97p부터 각 부서별로 과목별 집행 잔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불용된 단위사업내역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서별로 집행율 및 주요 불용사유 등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불용액은 사업의 변경, 예산 과다계상, 예산 미집행 등의 원인으로 발생함으로 당초 예산의 과다 계상여부 및 사업추진의 부적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 예산의 전용은 이용과 달리 의회의 승인은 불필요하나, 예산은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임.
- 올해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상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 권고 하였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첨 **부 :**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부. 끝.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1070

발의(제출)년월일 : 2019. 5. 27.

발의(제출)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신청

2. 주요골자

- 가. 「지방회계법」제14조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작성
- 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 검사기간 : 2019. 4. 5. ~ 4. 24. (20일간)
 - 검사대상 : 세입·세출 결산 등
 - 검사위원 : 김백철 구의원, 김삼현 세무사, 김대일 공인회계사, 박도근 전직공무원
- 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제출: 2019. 4. 24. 결산검사위원회
- 라.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규정에 따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신청

첨부 : 1. 2018회계연도 결산서 1부.

- 2. 2018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1부.
-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9. 6.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6. 3. 해운대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9. 6. 3.

다. 상 정 일 자: 2019. 6. 21.(제2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예비비 총액 및 지출액

(단위 : 원)

	예비비 총액	지출 결정액 및 지출액					
구 분 	구분 (1)		지출액 (3)	이월액 (4)	집행잔액 (2)-(3)-(4)		
총 계	18,451,070,000	93,618,000	45,449,600	45,000,000	3,168,400		
일반회계	18,344,170,000	93,618,000	45,449,600	45,000,000	3,168,400		
특별회계	106,900,000	_	_	_	_		

○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84억 5,107만원으로,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사업 등 5건 9,361만 8천원을 지출결정하여, 4,544만 9천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16만 8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음.

(특별회계는 지출 내역이 없음)

(2) 세부 지출내용

	F관	사 업 명	예산과목]출결정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는 T	부서	기 님 6	11047	일자	금액	(이월액)	ਜ਼ ਹ ਹੋ ਹ	ΛΙΞΛΙ <u>Τ</u>
		합계(5건)			93,618,000	90,449,600	3,168,400	
	도시해생 추진단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연구용역비	2018. 10. 1.	48,000,000	(45,000,000)	3,000,000	'도시재생뉴딜사업활 성화 계획수립 용역' 예산지원
일	재무과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8. 10.24.	21,218,000	21,218,000	0	2018.11.5.자 부서신설에 따른 물품구입
반 회	안전총 괄과	재난지원금 지급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018. 12.27.	20,000,000	20,000,000	0	2018년 폭염피해자(2명) 재난지원금 지급
계	의회	의사운영 지원	시설비	2018. 5. 4.	2,000,000	1,905,000	95,000	구의원(1명) 증원에 따른 의원실 시설개선비 지원
	사무국	의사운영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18. 5. 4.	2,400,000	2,326,600	73,400	구의원(1명) 증원에 따른 의원실 사무집기 구입 등 지원
특별 회계					해 당 없 음			

-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5건 9.045만원을 집행·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17만원임
 -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반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신속한 후속 행정절차 이행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4,800만원 지출결정하여 4,500만원을 이월하고 잔액 300만원이 남았으며,
 - 재무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21만 8천원은, 2018.11.5.자로 신설된 도시재생추진단 및 건축과 공동주택팀의 책상,의자 등 물품구입 부족분에 지출한 사항이며,
 - 안전총괄과 소관 민간인 재해보상금 2,000만원은, 2018년 7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사항임.
 - ※ 2018.9.18.「자연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 「폭염 인명피해 처리지침(2018. 11월, 행정안전부)」에 의거 2018년 7월 피해부터 소급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난 2018년 3월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우리 구의회 의원 수가 당초 17명에서 1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시설비 190만 5천원은 의원실 칸막이 설치 등 시설개선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2만 6천원은 의원실 사무집기 구입에 지원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에비비는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 업무추진비 그리고 예측가능하고 계획된 사업의 자산취득비 등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제한 하고 있어, 예비비의 지출 사유 및 시기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5건은 모두 예측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었으며,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첨 부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9. 5.

1071

제 출 자:해운대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예비비지출에 대 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총 계(5건)	93,618,000	45,449,600	45,000,000	3,168,400
일반회계(5건)	93,618,000	45,449,600	45,000,000	3,168,400
의사운영 지원	2,000,000	1,905,000	0	95,000
의사운영 지원	2,400,000	2,326,600	0	73,400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48,000,000	_	45,000,000	3,000,000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21,218,000	21,218,000	0	0
재난지원금지급	20,000,000	20,000,000	0	0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2. 현 황

(단위 : 원)

예비비촉인		예비비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						
구 분	예비비총액 (1)	결 정 액 (2)	지 출 액 (3)	이월액 (4)	집행잔액 (2)-(3)-(4)			
총 계	18,451,070,000	93,618,000	45,449,600	45,000,000	3,168,400			
일반회계	18,344,170,000	93,618,000	45,449,600	45,000,000	3,168,400			
특별회계	106,900,000	0	0	0	0			

3. 주요지출내용

사 업 명	지출 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총 계(5건)	93,618,000	45,449,600	45,000,000	3,168,400
일반회계(5건)	93,618,000	45,449,600	45,000,000	3,168,400
의사운영 지원	2,000,000	1,905,000	0	95,000
의사운영 지원	2,400,000	2,326,600	0	73,400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48,000,000	-	45,000,000	3,000,000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21,218,000	21,218,000	0	0
재난지원금지급	20,000,000	20,000,000	0	0

4. 집행현황

주관 부서	사 업 명	예산과목	지 일자	출결정 금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				4,400,000	4,231,600	0	168,400	
[일반회계 합계]				4,400,000	4,231,600	0	168,400	
의회 사무국	와 운영 자원	401-01 시설비	05.04.	2,000,000	1,905,000	0	95,000	구의원 증원(1명)에 따른 의원실 시설개선비 지원
의회 사무국	<u> </u>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05.04.	2,400,000	2,326,600	0	73,400	구의원 증원(1명)에 따른 의원실 집기 구입 등 지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2건)				69,218,000	21,218,000	45,000,000	3,000,000	
[일반회계 합계]				69,218,000	21,218,000	45,000,000	3,000,000	
도시 재생 추진단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207-01 연구용역비	10.01.	48,000,000	0	45,000,000	3,000,000	'도시재생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예산 지원
재무과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10.24.	21,218,000	21,218,000	0	0	2018.11.5일자 부서신설에 따른 물품구입
[주민도시보건위원회소관] (1건)				20,000,000	20,000,000	0	0	
[일반회계 합계]				20,000,000	20,000,000	0	0	
안전 총괄과	재난지원금 지급	302-02 민간인재해및 복 구활동보상 금	12.27.	20,000,000	20,000,000	0	0	2018년 폭염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